

영국판례 1

장문기사를 명예훼손물이라고 막연히 주장하는 소송은 부적법

D. D. S. A. Pharmaceuticals Ltd. v. Times Newspaper Ltd. 등

[1972] 1 Q.B.(Court of Appeal)

사실개요

1970. 10. 25 자 The Sunday Times 지의 칼라 보충판에, 『엄청난 약품사기』라는 제하의 기사가 1~10 면에 걸쳐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다. 그 기사의 요지는, 신원미상의 약품 소매상인들이, 의사가 처방한 유명상표의 값비싼 약품 대신에 훨씬 싼 값에 구입한 싸구려 모조품을 대체시키고는 보건부에 대하여 비싼 약품의 처방대금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보건부를 사기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 원고는 그 기사와 그 부속의 몇몇 삽화에서 언급된 각종 약품을 제조 및 공급하는 회사로서 그 신문의 소유주, 발행인 및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보충판의 첫 페이지와 그 뒤의 다른 3 페이지가 소장의 부속서류로서 별도로 송달되었다. 거기에 실린 어떤 특정한 문구나 사진이 특히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없었고, 이른바 자연적이거나 통상적인 의미가 어떻다는 주장도 없었다. 피고들은 판사보(Master)에게, 그 소장은 소송사유를 적절히 적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킬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 각하명령을 신청했다. 판사보는 원고로 하여금 28 일 내에 소장을 다시 제출할 것을 허락하면서 신청된 대로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판사는 위 소장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판사보의 각하명령을 취소해버렸다. 이에 피고들이 항고하였다. 고등법원은 항고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소장은 잘못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첫째로 기사의 내용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로 하여금 방어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심리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도, 문제된 기사의 자연적이고 통상적인 뜻이 어떤 것인지를 주장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명예훼손 소송의 주된 원인이 장문의 기사때문일 경우 원고는 그 기사 중 그의 명예를 침해한다고 볼 특정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그 전기사를 피고와 법원에 내던지는 것은 곤란하다.

Denning 판사의 판결이유

문제된 기사의 요점은 그 첫째 문단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영국의 많은 약국들이 조직적으로 보건부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 있다. 아마도 연간 백만 파운드는 족히 될 것이다. 그 방법은 이렇다. 어떤 의사가 유명상표의 약품을 처방한다. 그런데 약국은 환자에게 그보다 값싼 모조품을 지어주고서는 보건부에 대하여 그 유명상표의 약품가격 전액을 청구하여서 엄청난 이득을 취득한다. 그리고 문제되는 것은 사기 뿐만이 아니다. 값싼, 그래서 아마도 저질인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의 치료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고, 그런 행위는 최근에 개정된 약업 윤리규정에서 엄격히 단속되고 있다. 원고는 D.D.S.A. 제약사라는 회사이다. 원고에 의하면, 그 기사 중의 일부에서 원고가 상표명이 아닌 일반적인 이름(즉 학명)에 의해 지칭되는 이들 싸구려 약품의 일부를 공급했고, 그 사기에 눈을 감아줌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라는 누명을 쓴 것이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고 한다. 원고는 처음 「이 기사와 그에 대한 삽화들의 일반적인 의미는 특히 원고가 특허를 침해하여 조잡한 약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환자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케 하고, 약국들로 하여금 보건부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돈을 편취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The Sunday Times 지에 그 기사가 게재되기 하루 또는 이틀 전, 원고는 그것이 출판될 기미를 알고 있었다. 원고는 그 출판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금요일에 그 결정을 얻었으나, 일요일에는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그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다. 그래서 그 기사는 일요일인 1970.10. 25.에 게재된 것이다. 원고는 그 일요일판에 관하여 제소하였다. 그 소장의 내용은 매우 간결하다 :

「1. 원고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약품을 제조 · 판매하여온 자로서, London S.W 5 구 Old Brompton 가 310 번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2. 제 1 피고는 이 나라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한 신문인 The Sunday Times 지의 소유주 겸 발행인이고, 제 2 피고는 'Peter Durische' 라는 필명으로 위 신문에 기사를 쓰는 기자이다.

3. 위 신문의 1970. 10. 25 자 제 20, 21, 23 및 25 페이지에다 피고들은 악의로 원고와 원고의 사업에 관하여 『엄청난 약품사기』라는 제하의 허위 기사를 사진과 함께 인쇄·출판하거나 하게하였다. 문제의 기사내용과 사진은 여기에 별도로 첨부된 기사와 사진의 사본에 담겨 있다.

4. 원고는 그 결과로 명예와 사업에 대단한 침해를 받아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다. 특별한 손해에 관한 준비서면은 배심원이 소집되기 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것이 그 소장의 전부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불완전하다.

첫째로, 그 기사와 원고 사이의 관련이 설명되었어야 한다. 이 기사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너무나 많아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그 일반적이거나 가정적인 해석이 무엇인지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그 기사가 가진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명백히 주장해야 한다 그것은 재판의 공정한 전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피고들로 하여금 정당성의 항변(justification), 진정한 보도라는 항변(fair comment)을 제출하거나, 사과를 할 것인지 중 어느 대응방법을 채택할 것인지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종래의 여러 판례에 의하면 원고는 말(words)의 자연적이고 통상적인 의미만을 근거로 소송을 하는 때에도 그 말의 자연적 통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는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둘째로 이 사건 소장은 장문의 기사를, 명예훼손 했다는 특정부분의 지적없이 피고들에게 내던진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그 기사의 어떤 부분은 아무의 명예도 전혀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약품수입의 방법만을 기술하고있다. 그 밖의 부분은 어떤 성명불상의 약품 소매인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되지만 원고의 명예는 전혀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종류의 기사를 피고들과 법원에 대하여 어느 특정문구를 지적함이 없이 내던지는 것은 대단히 난처한 것이다. 판사보가 이점을 매우 현명하게 지적하였다. 「기사 전부가 명예훼손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그 기사 중 많은 부분은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원고는 어느 특정부분을 집어내고, 그 나머지는 그 기사에 명예훼손적인 뜻을 부여하는 주변사실 또는 전혀 상관없는 사실로 정리해야 한다.」 이 지적은 다년간 내려온 실무관행과 부합하는 것이다. 원고는 그의 명예가 훼손되는 특정한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 예컨대, 이 사건에 있어서, 「London에 기지를 둔 기업」에 관한 언급이 있다. 만약 그 표현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원고는 그렇게 주장해야 한다. 원고는 「원고를 지칭하고 있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그 기사에는 「London 교외에 본부를 둔 가장 큰 단일의 조직망」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이 원고를 지칭한다고 한다면, 원고는 「원고를 지칭하는」이라는 문구를 써야만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조치는 원고 자신에게 대단히 유익할 것이다. 이로써 원고의 생각을 명백히 할 것이며, 피고들에게도 역시 도움을 줄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나는 이 사건의 소장은 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판사보와 전적으로 같은 견해이다. 이 사건 소장은 이해하기 곤란하고 잘못된 것이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받아들여 판사보의 명령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Phillimore 판사와 Cairns 판사도 모두 같은 견해였다.